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순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하나,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개정되고 2008년 12월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실명제에 따라 서울시는 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서울시 조례는 다른 시·도와는 달리 타사광고(건물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에 대한 실명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된 실명제 대상에 자사광고를 포함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부착이 불가능한 실명제 표시 위치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